



제426회국회(정기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미성년자의 자율방범대 참여 확대 근거 규정 마련〉

■ 양부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886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양부남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5. 02. 04.
3. 회 부 일 : 2024. 02. 0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작되어 지역을 순찰하면서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등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고 안전운전 캠페인, 연탄나눔, 결손아동 지원 등 봉사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조직으로 성장하였음.

이에 2022. 4. 26. 현행법 제정으로 자율방범대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자율방범대원 결격사유로 미성년자가 포함되면서 기존에 대원으로 활동하던 청소년들이 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였음.

자율방범대로 활동하던 청소년들은 부모와 함께 지역의 결손가정이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를 실천하면서 교육적 측면에서 본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미성년자가 친권자인 부모와 함께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친권자가 모두 자율방범대원이며 미성년자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동의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 등) ① ----- ----- -----.
1. 미성년자 및 <u>피성년후견인</u> <u><단서 신설></u>	1. ----- <u>피성년후견인.</u> <u>다만, 친권자가 모두 자율방범대원이며 미성년자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동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현행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2022년 4월 26일 제정되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동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서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을 자율방범대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법률 제정 이전에는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들이 부모와 함께 방법 순찰 및 봉사활동 등에 참여하며,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하였음.¹⁾

한편, 행정안전부와 (사)한국자원봉사학회가 실시한 「2023 자원봉사 활동 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자원봉사에 참여한 성인의 82.7%가 사회적 책임감과 연대의식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바 있어, 청소년의 자율방법 활동 참여는 공동체 의식과 시민의식 함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청소년 안전 및 보호 측면에서의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자율방법대 활동은 야간 순찰 등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어 미성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있음. 자율방법대는 통상 범죄 발생률이 높은 야간 취약시간대의 우범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수행하는데, 활동 도중에 범죄 현장을 직면하거나 합동 검거와 같이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미성년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움. 「청소년기본법」, 「아동복지법」 등에서도 청소년이 정신적·

1) 예컨대 2012년 영등포구에서는 중·고등학생 40여 명이 성인 자율방법대원과 함께 순찰 활동을 하였고, 2015년 은평구에서는 60여 명, 2016년 부천 도당동에서는 30명, 2017년 광주 서구에서는 6개 동에서 총 196명, 2019년 서울 도봉구에서는 약 40명의 청소년이 자율방법대 활동에 참여하는 등 지역별로 다양한 규모로 청소년 참여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됨.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²⁾ 유사조직인 의용소방대 등도 현장 활동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실정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미성년자의 연령 제한이 명시되지 않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두 참여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하위 법령에 연령대별로 참여 가능한 활동의 범위를 구체화하거나 최소 연령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미성년자 순찰 시 범죄 현장 직면 등 위험 상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안전과 보호 측면에서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개정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견해임.

2) 「청소년 기본법」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 ① 청소년의 기본적 인권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 등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 ②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③ 청소년은 외부적 영향에 구애받지 아니하면서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밝히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④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 ⑤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344